



최근 보험계약 해지의 특징

박희우 연구위원

요약

- 생명보험협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소비자는 주로 ‘납입부담’ 혹은 ‘목돈필요’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2022년 큰 폭으로 증가한 보험계약 해지의 원인 및 특징에 대해 보험소비자의 보험계약 및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함
 - ‘납입부담’ 보험계약 해지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이 길어서 소비자가 향후 납부해야 할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유형임
 - ‘목돈필요’ 보험계약 해지는 보험료 적립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일시납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을 일시적인 목돈 마련을 위해 해지하는 유형임
 - 2022년 생명보험 일반계정+특별계정 해지환급금은 52조 원을, 효력상실환급금은 1.6조 원을 기록함
- 분석 결과, 최근 증가한 보험계약 해지의 원인은 주로 목돈필요 유형의 해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납입부담 보험계약 해지에는 연체 등 소비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최근 해지환급금 급증의 원인은 주로 60대 이상의 소비자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납입부담 유형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소비자 중 약 8%는 연체 등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겪으며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보장공백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유형별로 맞춤형 보험계약 유지지원 서비스 제공 및 안내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보험가입자의 계약유지 및 만기 저축성보험의 재가입을 위한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임
 - 납입부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소비자는 연체보유자 비율이 높고, 보장성보험의 해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보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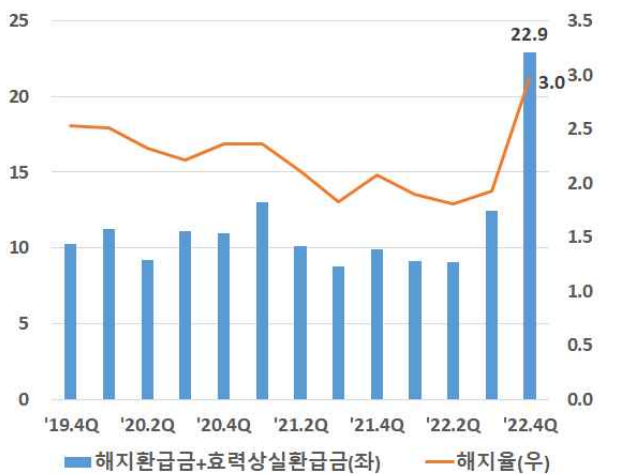
1. 서론

○ 2022년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으로는 경기부진 및 금리·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경제적 어려움, 고수익 투자 기회 확대, 보험금 실질가치 하락 등이 있을 수 있음

- 보험계약 해지가 빠르게 증가하며 2022년 생명보험 일반계정+특별계정 해지환급금은 52조 원을, 효력상실환급금은 1.6조 원을 기록함
- 2022년 가계대출 증가율과 실업률은 안정화되는 추세이지만,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금리와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였기 때문에 경기부진 및 금리와 물가 변동이 최근 보험계약 해지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음
 - 보험계약 해지는 가계대출·실업률 증가 혹은 경기부진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소득·지출능력이 감소할 때(긴급자금가설), 금리 상승으로 인한 다른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가 확대될 때(이자율가설), 물가 상승으로 인한 보험금의 실질가치가 하락할 때(인플레이션가설)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음¹⁾
- 한편 '13. 2월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에 앞서 '12년 대거 판매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해지 가능 기간이 도래²⁾함에 따라 '22년 4분기 해지환급금이 증가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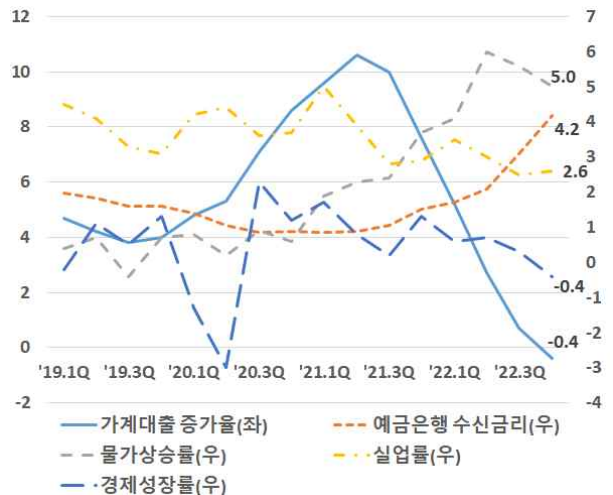
〈그림 1〉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및 해지율 추이

(단위: 조 원, %)



〈그림 2〉 보험계약 해지 관련 거시경제 변수 추이

(단위: %)



주: 1) 해지환급금+효력상실환급금은 생명보험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합계 기준임

2) 해지율=(효력상실액+해지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1) 가계대출 증가율 및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임

2) 예금은행 수신금리는 저축성 신규취급액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ECOS; 통계청, KOSIS

1) 이석호(2023), 『최근 보험업권의 해약 증가 동향과 시사점』, 금융연구원
2)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 본고에서는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 및 신용정보를 통해 최근 보험계약 해지의 원인과 특징을 분석함

- 거시경제 변수를 통한 분석에서 더 나아가 보험소비자 미시패널데이터를 통한 개별 소비자 단위의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분석은 보험회사와 정책당국에게 다방면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특히 최근 보험계약 해지 증가의 원인과 특징을 보험소비자 미시패널데이터를 통해 알아보고, 보험계약 해지의 유형 별로 소비자 신용활동 행태를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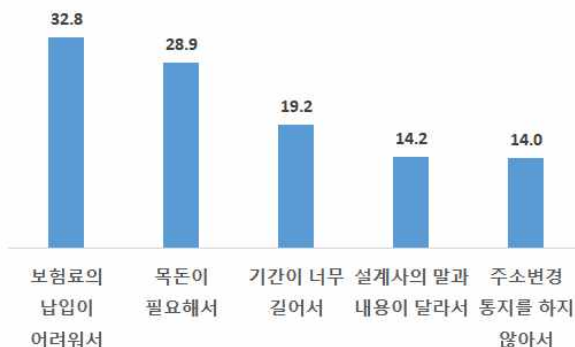
2. 보험계약 해지의 유형별 분석 요건 정의

○ 보험계약 해지는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소비자는 주로 ‘납입부담’ 혹은 ‘목돈필요’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계약의 해지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직접적으로 계약 종결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보험료 납입의무를 불이행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함³⁾
- 보험계약 해지의 직접적인 원인은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주로 ‘납입할 보험료의 부담’ 혹은 ‘목돈을 마련할 필요’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함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성향조사⁴⁾에 따르면 소비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어려워서’, ‘목돈이 필요해서’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였으며,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소비자가 보험계약 해지의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고 이어서 ‘목돈 마련이 필요해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서’라고 응답함
- 납입보험료 부담은 주로 보험소비자의 재무적 곤경이, 목돈 마련 필요는 재무적 곤경 혹은 투자 기회 포착 등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보험계약 해지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림 3〉 보험계약 해지 이유(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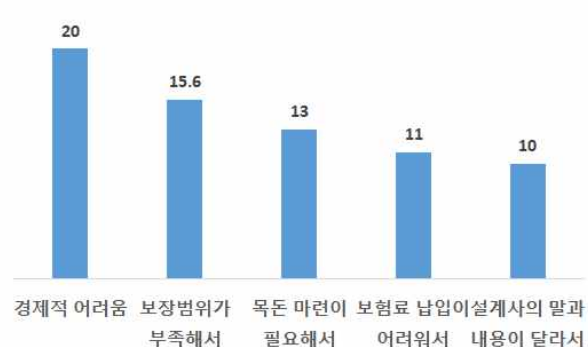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생명보험협회(2021), 「제16차 생명보험 성향조사」

〈그림 4〉 보험계약 해지 사유

(단위: %)



자료: 한국소비자원(2019), 「생명보험 해약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4) 생명보험협회(2021), 「제16차 생명보험 성향조사」

○ 본고에서는 한국신용정보원 CreDB를 통해 보험계약 해지의 유형을 ‘납입부담’과 ‘목돈필요’로 나누고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함

- 한국신용정보원 CreDB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신용정보를 샘플링하여 가명조치한 분석용 데이터이며, 보험 신용정보에는 인보험, 정액보험 정보가 등록됨⁵⁾
- ‘납입부담’과 ‘목돈필요’ 유형의 보험계약 해지를 데이터상에서 직접 구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료 적립금 수준’을 활용하여 정의함
 - ‘납입부담’ 보험계약 해지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보험료 총 납입기간-보험료 기납입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길어서 소비자가 향후 납부해야 할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유형으로 정의함
 - ‘목돈필요’ 보험계약 해지는 보험료 적립금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일시납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을 일시적인 목돈 마련을 위해 해지하는 유형임⁶⁾
 - 본고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료 적립금의 기준은 임의로 20년 이상 및 1,000만 원 이상이라고 정의하였지만, 기준을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혹은 500만 원 이상 등으로 바꾸어도 이하 분석결과는 유사함

〈표 1〉 분석 요건 및 주요 용어 정의

항목	설명
분석기간 및 대상자	2019년 12월~2022년 12월 보험계약정보를 보유한 소비자
보험계약 해지	t-1월에 정상상태의 보험계약이 t월에 효력상실 혹은 해지로 변화하는 경우
납입부담 보험계약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 ⁷⁾ 이 20년 이상인 보험계약
목돈필요 보험계약	보험료 적립금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일시납인 보험계약
전체 정상상태 보험계약	주계약상태가 (실효 및 해지 상태가 아닌) 정상상태의 전체 개인 보험계약



3. 보험계약 해지의 유형별 특징

○ '22년 4분기 해지율 상승의 주된 원인은 목돈필요 유형의 보험계약 해지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소비자들은 투자 기회 확대 혹은 생계자금 확보 등을 위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임

- 해지 보험계약 중 유형별 건수 비중 추이를 보면 납입부담의 경우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며, 목돈필요의 경우 '22년 하반기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그림 5〉 참조)
- 전체 정상상태 보험계약에서는 납입부담 혹은 목돈필요 유형의 시간에 따른 비중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최근

5) 한국신용정보원(2022. 7), 『신용정보 맞춤형DB 이용자 매뉴얼』; 한국신용정보원(2021. 4), 『보험신용정보 표본DB 이용자 매뉴얼』

6) ‘납입부담’과 ‘목돈필요’에 동시에 해당하거나 각 경우에 한 번씩만 해당하는 보험계약 해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눠서 분석하지 않음

7)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보험료 총 납입기간-보험료 기납입기간

보험계약 해지 급증의 주된 원인은 소비자가 목돈이 필요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목돈필요 유형의 보험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은 금리상승으로 인한 고수익 투자 기회 탐색 혹은 생계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임
 - 한편 '22년 4분기 목돈필요 유형의 해지 보험계약 중 저축성보험의 상당수(건수 기준 약 10%)가 '12년 4분기 가입한 저축성보험으로 나타나 일부 소비자들은 비교세 혜택을 충족한 저축성보험계약을 해지함

〈그림 5〉 해지 보험계약 중 '납입부담' 및 '목돈필요' 유형의 건수 비중 추이

(단위: %)



주: 1) 해지 보험계약은 t-1월에 정상상태의 보험계약이 t월에 효력상실 혹은 해지로 변화하는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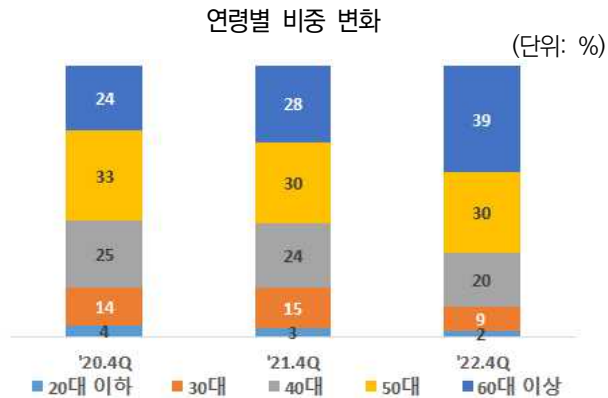
2) 납입부담 유형은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이 20년 이상인 보험계약이며, 목돈필요 유형은 일시납 혹은 보험료 적립금이 1,000만 원 이상인 보험계약임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CreDB

○ '22년 4분기 증가한 목돈필요 유형의 보험계약 해지는 주로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생하였으며, 납입부담 해지의 연령별 비중은 시점에 따른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목돈필요 유형의 보험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의 연령별 비중은 최근 60대 이상에서 상승하였으며('20.4Q 24% → '22.4Q 39%), 이를 통해 '22년 4분기 증가한 보험계약 해지는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높은 비중으로 발생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음(〈그림 6〉 참조)
 - 전체 목돈필요 유형의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의 60대 이상 비중('20.4Q 26%, '22.4Q 29%)과 비교하여도 그 차이가 '20.4Q 1%p에서 '22.4Q 10%p로 커짐
- 반면 납입부담 보험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의 연령별 비중은 시점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으며(〈그림 7〉 참조), 전체 납입부담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의 연령별 비중과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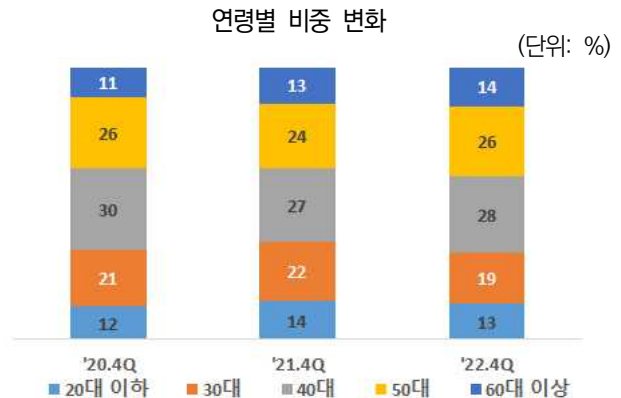
〈그림 6〉 목돈필요 보험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의



주: 목돈필요 보험계약은 일시납 혹은 보험료 적립금이 1,000만 원 이상인 보험계약임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CreDB

〈그림 7〉 납입부담 보험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의



주: 납입부담 보험계약은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이 20년 이상인 보험계약임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CreDB

○ 납입부담 보험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는 목돈필요 해지자에 비해 연체보유자 비율이 높으며, 연체 등 경제적 어려움이 보험계약 해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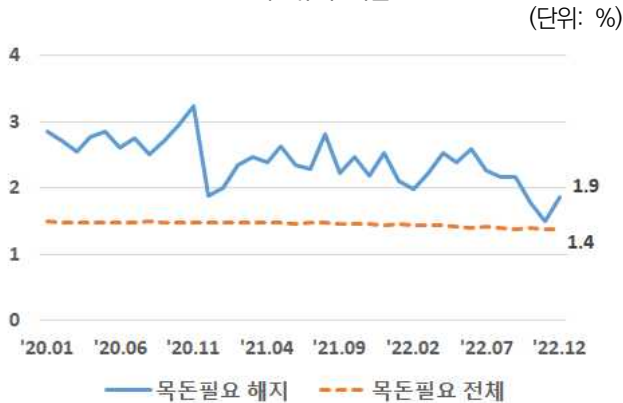
- 목돈필요 및 납입부담 보험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의 연체 보유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매월 각 유형별 보험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 대해 월말 연체보유자 비율을 살펴봄(〈그림 8〉, 〈그림 9〉 참조)⁸⁾
 - 연체보유자 비율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기준으로 연체 보유 중인 차주 비율임
- 목돈필요 보험계약을 해지한 소비자 중 연체보유자 비율은 '22. 12월 1.9%로 낮은 수준⁹⁾이며, 전체 목돈필요 보유자의 연체보유자 비율과 비교하여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목돈필요 보험계약 해지와 연체 여부에는 뚜렷한 연관성이 없음
- 반면 납입부담 보험계약 해지 소비자는 연체보유자 비율이 '22. 12월 8.0%로 전체 납입부담 보험계약 보유 소비자 3.0%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기 때문에 납입부담 보험계약을 보유 중인 소비자는 연체 여부가 보험계약 해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납입부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소비자는 '22. 12월 기준 97.6%가 보장성보험을 해지하여¹⁰⁾ 납입부담 보험계약 보유자는 보장공백에도 불구하고 연체 등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보장성보험을 높은 비중으로 해지한 것으로 판단됨

8) 각 유형별 보험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의 연체 보유 비율에는 본래의 특징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매 월말 전체 목돈필요 및 납입부담 보험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의 연체보유자 비율과도 비교함

9) '22. 12월 정상상태 개인보험을 보유 중인 보험계약자의 연체보유자 비율은 3.0%임

10) '22. 12월 목돈필요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소비자의 43.7%가 보장성보험을 해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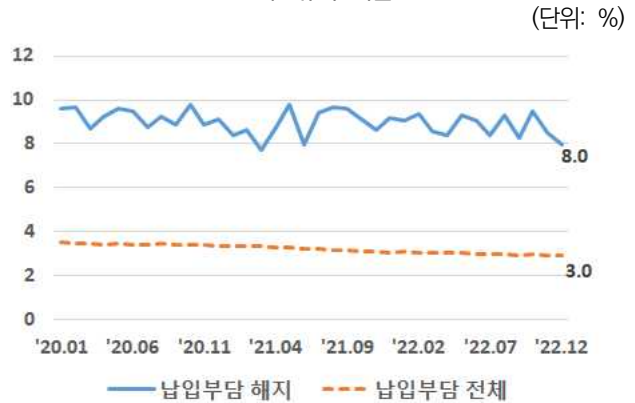
〈그림 8〉 목돈필요 보험계약 해지자 및 보유자의
연체보유자 비율



주: 매월 목돈필요 보험계약을 해지한 소비자 및 매월말 목돈필요 보험계약을 보유 중인 소비자가 월말에 연체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CreDB

〈그림 9〉 납입부담 보험계약 해지자 및 보유자의
연체보유자 비율



주: 매월 납입부담 보험계약을 해지한 소비자 및 매월말 납입부담 보험계약을 보유 중인 소비자가 월말에 연체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CreDB



4. 결론

- 본고에서의 분석 결과, 최근 증가한 보험계약 해지의 원인은 주로 목돈필요 유형의 해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납입부담 보험계약 해지에는 연체 등 소비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최근 해지환급금 증가의 원인은 주로 60대 이상의 소비자가 목돈을 마련하여 투자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납입부담 유형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소비자의 8% 가량은 연체 등 가계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장성보험의 해지 비중이 높음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보장공백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현재 다양한 보험계약 유지지원 제도¹¹⁾를 실행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의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안내 강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목돈필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대출의 대출이자 수준을 조정하는 등 편의성 증대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납입부담 유형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기간 확장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11)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보험가입금액 감액 등임

- 또한 근본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의 계약유지 및 만기 저축성보험의 재가입 등을 위한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하며,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수수료 절감, 연금상품 연계 전략 등의 고려가 필요해 보임¹²⁾
 - 특히 60대 이상의 보험소비자가 목돈필요 유형의 해지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수수료 일시납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임
- 납입부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소비자는 연체보유자 비율이 높아 보장기능의 필요성이 높은 계층¹³⁾일 가능성이 높고, 보장성보험 위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보장공백 발생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와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2) 김세중·김윤진(2022), 『저축보험 해지 관심도 증가와 시사점』, 보험연구원

13) 이석호(2017), 『최근 보험계약 해약 동향 및 시사점』, 금융연구원